

종합계좌 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중심(단독)계좌 약관	종합계좌 약관	계좌체계변경에 의한 명칭변경
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 중심계좌 : 고객이 거래매체, 인감, 서명,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(이하 “접근매체”라 한다)를 하나 또는 복수의 연결계좌와 공유하도록 설정한 계좌를 말한다. ② 단독계좌 : 고객이 계좌별로 접근매체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한 계좌를 말한다. ③ ~ ⑤ 생략 ⑥ 자동화기기 : 은행의 관리 하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ATM(Automated-Teller Machine) 및 CD(Cash Dispenser)를 말한다.	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 <u>종합계좌 : 제도적으로 각각 운영해야하는 상품을(선물옵션 거래 계좌 및 한도 상품 등) 제외한 당사의 매매가능한 개별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</u> <u>② "개별상품"이라 함은 종합계좌 내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상품을 말한다.</u> ③ ~ ⑤ 생략 ⑥ 자동화기기 : <u>회사, 은행 및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의</u> 관리 하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ATM(Automated-Teller Machine) 및 CD(Cash Dispenser)를 말한다.	계좌체계변경에 의한 용어정의 삭제 및 변경 모바일 통장 서비스 도입에 따른 문구추가
제 3 조(계좌의 이용)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관리체계를 중심계좌 또는 단독계좌 중 택일하여야 한다. 한다.	제 3 조(계좌의 이용) ① <u>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개별상품의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</u> <u>1. 개별상품의 거래는 매수/매도 가능금액 또는 출금 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</u> <u>2.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개별상품의 관련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</u> <u>③ 고객이 랩어카운트 서비스 또는 CMA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좌를 사용하여야한다</u>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
제 4 조(계좌개설의 신청방법 등)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고객은 계좌의 추가개설 없이도 회사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계좌(이하 "기존계좌"라 한다)로 거래가 가능하다. 1. 기존계좌에 허용된 거래종류 중에서 추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종류의 일부를 해지할 때 2. 신규 거래의 종류가 장내파생상품으로 기존계좌에 자동연결등록 되어 사용하는 경우 ③ 생략	제 4 조(계좌개설의 신청방법 등)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고객은 계좌의 추가개설 없이도 회사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계좌(이하 "기존계좌"라 한다)로 거래가 가능하다. 1. 기존계좌에 허용된 거래종류 중에서 추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종류의 일부를 해지할 때 2. 제도변경 또는 전산시스템 개선등에 의하여 신규 거래종류가 기존계좌에 허용되는 경우 ③ 생략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	
제 6 조(비밀번호의 등록) ① 비밀번호는 4~8 자리 숫자(영문자 포함)로 등록이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숫자(영문자 포함)는 비밀번호로 등록할 수 없다. 1. 동일한 숫자 2. 실명확인번호 3. 연속하는 숫자의 조합 ② 고객은 중심계좌용 비밀번호의 등록과 별도로 연결계좌용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없으며 단독계좌의 경우 계좌별로 비밀번호를 등록한다. ③ 자동화기기(ATM/CD), 모바일, ARS 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비밀번호 앞 4 자리는 숫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	제 6 조(비밀번호의 등록) ① 비밀번호는 4~8 자리 숫자(영문자 포함)로 등록이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숫자(영문자 포함)는 비밀번호로 등록할 수 없다. 1. 동일한 숫자 2. 실명확인번호 3. 연속하는 숫자의 조합 4. 계좌번호 ② 고객은 계좌별로 비밀번호를 등록한다. ③ 자동화기기(ATM/CD), 모바일, ARS 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비밀번호 앞 4 자리는 숫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	
제 7 조(통보 신청) ① 고객은 월간 거래내역 및 잔액·잔량현황의 통보여부와 통보방법을 계좌개설시 회사에 등록하여야 하며, 이의 변경을 원할 경우 영업점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. ② 통보방법은 중심계좌 내 모든 연결계좌에 동일하게 계좌별로 적용된다. ③ 생략	제 7 조(통보 신청) ① 고객은 월간 거래내역 및 잔액·잔량현황의 통보여부와 통보방법을 계좌개설시 회사에 등록하여야 하며, 이의 변경을 원할 경우 영업점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. ② 통보방법은 계좌별로 적용된다. ③ 생략	자구수정 (단순 용어 수정)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
제 8 조(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) ① 월간 거래내역 및 잔액.잔량현황의 우편통보 여부는 중심계좌 내 모든 연결계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단독계좌의 경우 계좌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 ②~⑤ 생략	제 8 조(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) <u>① 월간 거래내역 및 잔액.잔량현황의 우편통보 여부는</u> <u>계좌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</u> ②~⑤ 생략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제 9 조(거래매체의 이용) ① 고객은 계좌개설시 다음 각 호에 나열된 거래매체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. 1~4 생략 ②~⑤ 생략	제 9 조(거래매체의 이용) ① 고객은 계좌개설시 다음 각 호에 나열된 거래매체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. 1~4 생략 <u>5.모바일통장</u> ②~⑤ 생략 <u>⑥ 모바일통장 : 모바일 앱을 통해,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거래하는 서비스 매체이며, 창구출금 또는 제휴 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.</u>	거래매체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(모바일통장 서비스 도입)
제 10 조(현금 및 증권 등의 출납) ①~② 생략 ③ 고객이 사전에 계좌 관리체계로서 중심계좌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 약정 없이도 <별첨>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중심계좌 및 연결계좌 간의 자금이동이 가능하다.	제 10 조(현금 및 증권 등의 출납) ①~② 생략 <u>③ 삭제</u> <u>③ 회사는 고객이 사이버 및 유선 한도를 신청한 경우, 그 신청한 금액을 요청 한도로 적용되며,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안매체 기본한도를 자동으로 부여한다.</u>	계좌체계 및 이체한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제 12 조(계좌의 수시폐쇄) ① 생략 ② 중심계좌의 폐쇄는 중심계좌 내 모든 연결계좌의 폐쇄를 의미하며, 어느 한 개의 연결계좌라도 거래를 유지하려면 중심계좌를 폐쇄할 수 없다.	제 12 조(계좌의 수시폐쇄) ① 생략 <u>② 삭제</u>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
제 13 조(계좌의 통합 및 폐쇄)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·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. 단, 중심계좌는 중심계좌 내 어느 한 개의 연결계좌에서라도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·입출고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는 계좌의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.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·잔량이 예탁자산의 합계가 "영"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. 단, 중심계좌는 중심계좌 내 어느 한 개의 연결계좌라도 계좌폐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심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.	제 13 조(계좌의 통합 및 폐쇄)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·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. <u>좌측 밑줄 부분 삭제</u>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·잔량이 예탁자산의 합계가 "영"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. <u>좌측 밑줄 부분 삭제</u>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(부 칙) (추가)	(부 칙) <u>(시행일) 이 약관은 당사의 차세대 시스템 오픈으로 계좌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'중심(단독)계좌 약관'을 '종합계좌 약관'으로 변경하여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u>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약관명칭 정정 및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명시
〈별첨〉 1. 제 1 조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증권은 다음과 같다. – 주식 및 CB, BW, 채권, ELS, DLS, RP, CD, CP, 수익증권, 뮤추얼펀드, 외화증권, 선물, 옵션	〈별첨〉 1. 제 1 조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증권은 다음과 같다. – 주식 및 CB, BW, 채권, ELS, DLS, RP, CD, CP, 수익증권, 뮤추얼펀드, 외화증권, 선물, 옵션, <u>신탁계약, Wrap 계약, CMA 등</u>	계좌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3. 제 10 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거래매체는 다음과 같다. 가~라 생략	3. 제 10 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거래매체는 다음과 같다. 가~라 생략 <u>마. 모바일통장</u>	거래매체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(모바일통장 서비스 도입)

4. 제 10 조제 3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범위는 다음과 같다. 가. 고객이 유선 및 사이버 이체/대체 한도를 설정한 경우 : 설정한도를 적용 받음 - 입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이체시 고객이 설정한 이체한도 (당일 누적 100 만원 이하)내에서 송금 가능 나. 고객이 유선 및 사이버 이체/대체 한도를 설정 안 한 경우 : 회사 최고한도를 적용 받음 1) 회사 최고한도 <table><tr><th>매체구분</th><th>1 회 최대한도</th><th>1 일 최대한도</th></tr><tr><td>사이버(PC)</td><td>1 억원</td><td>5 억원</td></tr><tr><td>모바일</td><td>1 억원</td><td>2 억 5 천만원</td></tr><tr><td>ARS</td><td>5 천만원</td><td>2 억 5 천만원</td></tr><tr><td>유선</td><td colspan="2">개인 500 억원, 법인 1,000 억원</td></tr></table> 가) OTP 한도 나) 보안카드 한도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거래이용 수단</th><th colspan="2">인터넷(PC)</th><th colspan="2">ARS</th><th colspan="2">모바일</th></tr><tr><th>1 회</th><th>1 일</th><th>1 회</th><th>1 일</th><th>1 회</th><th>1 일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보안카드 +ARS 인증</td><td>1 억원</td><td>5 억원</td><td>5 천만원</td><td>2 억 5 천만원</td><td>1 억원</td><td>2 억 5 천만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보안카드 +SMS 통보</td><td>5 천만원</td><td>2 억 5 천만원</td><td>1 천만원</td><td>5 천만원</td><td>5 천만원</td><td>2 억 5 천만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보안카드</td><td>1 천만원</td><td>5 천만원</td><td>1 천만원</td><td>5 천만원</td><td>1 천만원</td><td>5 천만원</td></tr></table> ※ 보안카드 1 등급 고객은 기존 ARS 뱅킹 최고한도로 이용하고자 하면 OTP 발급해야 함 ※ 입금계좌 지정여부 “등록”인 경우 OTP 한도 적용	매체구분	1 회 최대한도	1 일 최대한도	사이버(PC)	1 억원	5 억원	모바일	1 억원	2 억 5 천만원	ARS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유선	개인 500 억원, 법인 1,000 억원		구분	거래이용 수단	인터넷(PC)		ARS		모바일		1 회	1 일	1 회	1 일	1 회	1 일	1등급	보안카드 +ARS 인증	1 억원	5 억원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1 억원	2 억 5 천만원	2등급	보안카드 +SMS 통보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1 천만원	5 천만원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3등급	보안카드	1 천만원	5 천만원	1 천만원	5 천만원	1 천만원	5 천만원	4. 제 10 조제 3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u>가~나 모두 삭제</u> <u>추가</u> [사이버]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등급</th><th rowspan="2">거래이용수단</th><th colspan="2">인터넷</th><th colspan="2">ARS</th></tr><tr><th>1 회</th><th>1 일</th><th>1 회</th><th>1 일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개인</td><td>1 등급 & 약정계좌</td><td>OTP 또는 보안카드+ARS 인증 + 공인인증서</td><td>1 억</td><td>5 억</td><td>5 천만</td><td>2 억 5 천만</td></tr><tr><td>2 등급</td><td>보안카드 + SMS 인증 + 공인인증서</td><td>5 천만</td><td>2 억 5 천만</td><td>1 천만</td><td>5 천만</td></tr><tr><td>3 등급</td><td>보안카드 / 모바일 OTP +공인인증서</td><td>1 천만</td><td>5 천만</td><td>1 천만</td><td>5 천만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법인</td><td>약정계좌</td><td></td><td>10 억</td><td>50 억</td><td>1 억</td><td>5 억</td></tr><tr><td>미약정계좌</td><td>미신청 / 신청 (OTP + 법인미약정이체 한도 설정)</td><td>0 / 5 천만</td><td>0 / 5 천만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 [유선]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기본한도</th></tr><tr><td>개인</td><td>10 억</td></tr><tr><td>법인</td><td>100 억</td></tr></table>	구분	등급	거래이용수단	인터넷		ARS		1 회	1 일	1 회	1 일	개인	1 등급 & 약정계좌	OTP 또는 보안카드+ARS 인증 + 공인인증서	1 억	5 억	5 천만	2 억 5 천만	2 등급	보안카드 + SMS 인증 + 공인인증서	5 천만	2 억 5 천만	1 천만	5 천만	3 등급	보안카드 / 모바일 OTP +공인인증서	1 천만	5 천만	1 천만	5 천만	법인	약정계좌		10 억	50 억	1 억	5 억	미약정계좌	미신청 / 신청 (OTP + 법인미약정이체 한도 설정)	0 / 5 천만	0 / 5 천만			구분	기본한도	개인	10 억	법인	100 억	이체한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(보안매체 기본한도를 설정하고, 고객이 요청시 사이버 및 유선 이체 한도 정정 할 수 있도록 함)
매체구분	1 회 최대한도	1 일 최대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이버(PC)	1 억원	5 억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모바일	1 억원	2 억 5 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RS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선	개인 500 억원, 법인 1,000 억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거래이용 수단	인터넷(PC)		ARS		모바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 회	1 일	1 회	1 일	1 회	1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등급	보안카드 +ARS 인증	1 억원	5 억원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1 억원	2 억 5 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등급	보안카드 +SMS 통보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1 천만원	5 천만원	5 천만원	2 억 5 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	보안카드	1 천만원	5 천만원	1 천만원	5 천만원	1 천만원	5 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등급	거래이용수단	인터넷		ARS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1 회	1 일	1 회	1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	1 등급 & 약정계좌	OTP 또는 보안카드+ARS 인증 + 공인인증서	1 억	5 억	5 천만	2 억 5 천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 등급	보안카드 + SMS 인증 + 공인인증서	5 천만	2 억 5 천만	1 천만	5 천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 등급	보안카드 / 모바일 OTP +공인인증서	1 천만	5 천만	1 천만	5 천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인	약정계좌		10 억	50 억	1 억	5 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미약정계좌	미신청 / 신청 (OTP + 법인미약정이체 한도 설정)	0 / 5 천만	0 / 5 천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본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	10 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인	100 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제 25 조제 2 항제 2 호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이체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 - 서비스수수료 면제 - 창구, 사이버, 전 은행CD 기 이체출금수수료, 전 은행 CD 기 출금수수료 면제	5. 제 25 조제 2 항제 2 호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이체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 <u>좌측 밑줄부분 삭제</u> <u>추가</u> - 제휴은행 연결계좌 이체 및 CD 기 출금 수수료 면제	자구수정 (단순 문구 수정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